

1997. 11. 13.

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[총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
총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

총무위원회

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자
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	'97.11. 8	'97.11. 11	'97.11. 13	'97.11. 13	세정과장
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	'	'	'	'	'

2. 제안설명요지

가).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2) 주요골자

-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(제14조의 2)
-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: 2년
-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지급
- 조직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

나.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자동폐지 되고
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교육 및 주택건설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.

2) 주요골자

- 세제지원 감면 규정폐지
 -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감면
 -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
-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신설
 -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
 -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
 -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
 -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
- 시행일 :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).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- 지방세법 제70조의 과세전 적부심사가 신설됨에 따라 공정한 과세를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서
 -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'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'를 두고

·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

-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등시행 규칙 제36조의 3의 5항이 '97년 10월 4일 신설됨으로서
- 이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시·군 세조례증개정조례안이 일괄 시군에 시달되어 그에 따른 충주시 시세조례를 일부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.

4.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

- 현행 조례에서 조세정책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방세법에 규정된 분야는 삭제하는 등 시세감면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 -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면제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충복 되므로 삭제
 - 짐형승용차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한 것은 현재 대부분 레저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에 여유가 있는 자들이 구입하고 또한 일반승용차동차 소유자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삭제
 - 상이 등급 1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등급 1내지 3급·장애인의 본인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본인외에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·비속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토록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자활의지를 도모하도록 보완하였으며
 - 지방공사, 신용보증조합,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, 유통업지원분야는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

-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3년간 연장 시행하려고 하는 것임.
-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시세감면 조례개정조례안이 일괄 시군에 시달되어 그에 따른 충주시시세감면조례를 전문개정 하려는 것이며
- 또한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이므로 입법예고는 거치지 않았음.

4. 질의 답변요지

가).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

{ 질의 }

- 모든 지방세를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하는지?

☞ 답변

- 과세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하며 세무조사, 감사, 과세예고시 해당됨.

나).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

- 없음

5. 심사결과

가.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—

원안가결

나.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—

6. 불임

가.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

나.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